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

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6. 10. 4(화)	담당부서	석탄산업과
담당과장	이상준 과장(044-203-5280)	담 당 자	서주원 사무관(044-203-5285)

연탄사용 저소득층 직접지원 강화한다

- 석탄, 연탄 고시가격(공장도 가격)을 각각 8%, 19.6% 인상 -

- 저소득층 가구에는 추가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을 통해 가격인상분 전액 지원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는 2016년 석탄·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액을 반영한 "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"를 10.4(화) 개정 고시하였다.

○ 동 고시는 **석탄 고시가격을 8% 인상**(4급* 기준 : 147,920원/톤→159,810원/톤)하고, **연탄 고시가격(공장도 가격)**은 **19.6% 인상****(373.5원/개→446.75원/개)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.

* 석탄의 열량을 등급으로 설정하여 등급에 따라 판매가격 설정

** 연탄 가격 19.6% 인상시 유통비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은 500원에서 573원으로 15% 인상

□ 이번 가격인상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, **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**에 대한 **직접지원**을 보다 **강화**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
○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석탄·연탄의 생산원가보다 낮은 판매가격을 고시하고,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중이다.

- 생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가격 동결(석탄 '11년, 연탄 '09년 이후 동결) 으로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.

* '15년 석탄은 생산원가의 78%, 연탄은 생산원가의 57% 수준

○ 더욱이, 2010년 우리나라가 G-20에 제출한 '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' 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,

- 가격현실화를 위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나, 서민연료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금번에는 인상수준을 최소화하였다.

□ **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**에 대해서는 연탄을 구매할 수 있는 **연탄쿠폰**의 **지원금액**을 **대폭 확대**하여 난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.
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등('15년 기준 7.7만가구)에 대해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(16.9만원→23.5만원)하여 가격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전혀 없도록 하고,

○ 유류·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며,

○ 연탄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와 시설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'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'과 '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'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이번 가격인상을 통해 절감되는 정부 재정으로 석탄생산 감소에 따른 이직탄광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서주원 사무관(☎ 044-203-528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try of Trade, 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10-04 09:15:13